한국물산업협의회 공고 제2021-01호

2021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

혁신 물기술을 보유하고 국내·외 사업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을 주도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'혁신형물기업 지정·지원 사업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희망하는 물산업 중소기업은 2021. 04. 11.(일) 18: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3월 2일

한국물산업협의회장

1 사업개요

□ **사업 목적**

○ R&D·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며 연구개발·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제도

○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 물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물기업으로 육성

□ **사업 규모**

○ 총 750백만원 내외 (75백만원×10개사)

※ 지정기업당 매년 75백만원 내외 5년간 지원

□ **(사업 기간)** 협약체결일 ~ 사업 종료 시까지(유효기간 5년)

□ **(공고 및 신청·접수기관)** 한국물산업협의회

2 신청자격 요건

□ 신청자격 필수요건

○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신청기업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.

구분	필수요건 세부항목
업종	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'물산업'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업력	- 최근 2년 이상 회계결산 재무제표 보유기업
요건 (中 2개 이상 충족)	-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**연구개발비 비율 3%** 이상 -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**수출액 비율 5% 이상** - **외국의 정부,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인증*을 받은 부품·장치·기기·기술 또는 공법** 보유

* 국내 정부, 공공기관 또는 협회로부터 받은 부품·장치·기기·기술 또는 공법 인증은 신청자격 요건으로 불인정 함

3 참여제한

○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」제2조제3호의 물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
○ 타인의 지식재산권*을 침해하는 경우

* 지식재산권중 산업재산권(특허권·실용신안권)에 한하며, 확정된 경우(특허심판원)

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

○ 신청기업이 휴업·폐업 중인 경우

○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(단, 신청전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)

○ 최근 2년간 평균 부채비율이 500% 이상 인 경우 또는 최근 2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

4 사업신청 및 추진절차

□ 혁신형 물기업 지원사업 평가 및 지정심의 일정(안)

○ **공고 및 접수** : 2021. 3. 2.(화) ~ 4. 11.(일), 41일간

○ **사전검토** : 2021. 4. 12.(월) ~ 4. 19.(월)

○ **1차 서류평가** : 2021. 4. 22.(목), 10:00 ~ 16:00

○ **2차 발표평가 대상 통보** : 2021. 4. 23.(금)(발표평가 일정은 개별통보)

<2차 발표평가 대상기업 제출 필요 자료>
- 발표용 PT 자료 : 4.2(수) 17:00까지 사업담당자 이메일 제출(자료변경시)
- 2차 발표평가 당일 복사본 10부 제출

○ **2차 발표평가** : 2021. 4. 29.(목), 13:00 ~ 18:00

※ 평가장에는 사업책임자를 포함, 최대 2인까지 참석 가능

○ **최종 지정심의** : 2021. 5. 4.(화), 14:00 ~ 18:00(물산업기술심사단)

○ **결과 통보** : 2021. 5. 7.(금)

※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가능

○ **지정서 수여식** : 2021. 5. (예정)

□ 추진절차

공고 및 신청·접수(3.2~4.11)	▪한국물산업협의회(온·오프라인 공고 및 온라인 접수)
▼	
사전검토(4.12~19)	▪한국물산업협의회(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)
▼	
평가(1차, 4.22), (2차, 4,29)	▪평가(1차 서류평가, 2차 발표평가
▼	
지정심의(5.4)	▪물산업기술심사단 지정심의(10개사) ※지정통보(5.7)
▼	
지정서 교부	▪환경부(10개사)
▼	
성과평가	▪전년도 실적에 대한 정기평가(년 1회)
▼	
협약 체결	▪혁신형물기업↔한국물산업협의회
▼	
(현장)중간점검	▪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의 지원예산 사용점검 및 현장확인
▼	
정산 및 사후관리	▪ 혁신형물기업↔한국물산업협의회↔환경부

5 지정 유효기간

□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은 지정일 이후 5년간 유효함. 다만, 매년 자격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지정취소 할 수 있음.

*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혁신형 물기업 지정 등) 및 시행령 16조(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)

□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에 대해 연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실적 등이 저조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

*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혁신형 물기업의 지원) 및 시행령 17조(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)

6 지원 내용

□ 혁신기술진단 및 고도화, 혁신기술 해외진출, 판로개척 등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

구분	지원내용	금액
혁신기술 진단 및 고도화 (개별지원)	**기업 현황진단 및 R&D전략 설계 지원** - 전문 컨설팅 기관을 활용한 기업현황 진단, 기업별 특성에 맞는 중·장기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 - 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기술 가치평가 및 고도화 지원	기업당 6천만원 이내
	연구시설 개선 지원 - 안정적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시설 개선비용 지원	
	제품 규격화 제작지원 - 혁신기술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규격화 지원	
혁신기술해외진출 (개별지원)	**현지 테스트 및 기술 검증 지원** - 테스트 베드(Test-Bed) 등을 활용한 신제품 성능평가 지원 - 현지 테스트 베드 설치를 통한 기술 검증 지원	기업당 75백만원 이내
	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 - 해외발주처 요구를 반영한 변형 시제품 제작지원	
	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- 비관세 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국제인증 획득 등을 지원	
판로개척 (공동지원)	**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지원** -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 연구개발 투자 지원	기업당 75백만원 이내
	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지원 - 해외 주요 물산업 전시회 참가지원 및 혁신형 물기업 해외홍보 등을 통한 물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	

※ 당해년도 예산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75백만원/년 지원

7 사후 관리

□ 지정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및 성과 모니터링

※ 정기평가 : 연 1회, 종합평가 : 5년/1회

○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의견수렴(수시)

○ 국내외 사업실적, 보유기술의 실용화 실적, 고용 창출 실적에 대한 성과관리

□ 혁신형 물기업 지정 자격 요건 점검 (1년단위)

○ 지정기업에 대한 자격 기준 검토

8 사업신청 방법

○ **접수기간** : 2021. 03. 02.(화) ~ **04. 11.(일), 18:00까지** 도착분에 한함

○ **제출서류 :** 별지 제1호*, 2호, 4호, 5호 서식, 발표자료* 및 **관련 서류 일체** (「혁신형 물기업 운영규정」 참조)

* 신청일은 마감일과 동일하게 기재 요망

* 혁신기술 중심으로 10페이지 이내 작성하여 제출

제출예시) 기업명.zip(파일명)

1. 신청서_기업명
2. 사업현황 설명 자료_기업명
3. 수출실적 집계표_기업명
   3-1. 증명서
4.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_기업명
5. 제출서류_기업명
   5-1. 사업자등록증, 5-2. 중소기업확인서
   5-3. 법인등기부등본
   5-4. 국세 및 지방세납입증명서
   5-5. 재무재표('19&'20년),
   5-6. 인증서(국외), 5-7. 지식재산권
   5-6. 고용보험명부
6. 가점 서류_기업명
   6-1. NET
   6-2. 기타
7. 발표자료

○ **접수방법 : 메일**(innowater@kwp.or.kr)

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마감일 4.11.(일), 18시 이후 자료제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
9 문의처

□ 한국물산업협의회 혁신형 물기업 담당자

○ 전 화 : 02-2634-6783~4 / 이메일 : innowater@kwp.or.kr

목 록	담당기관 예시
1. 사업자등록증	국세청 홈텍스 (www.hometax.go.kr)
2. 중소기업확인서	중소벤처기업부 (www.mss.go.kr)
3. 법인등기부등본	인터넷 등기소 (www.iros.go.kr)
4.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-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증명서만 인정	국세청 홈텍스 (www.hometax.go.kr)
5. 최근 2년 결산 표준재무재표증명원	국세청 홈텍스 (www.hometax.go.kr)
6. 수출거래 실적 증명서 ◦ 수출실적 조회시스템 정보제공 동의 진행 ◦ 신청일 기준(최근 2년 이상) 최종 수출거래 실적 증명서 및 기타 수출·실적증명서	◦직접수출 : 한국무역협회(www.kita.net), 외국환은행장,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등 ◦간접수출 : 한국무역정보통신(www.ktnet.co.kr) 또는 은행별 수출실적증명원
7. 해외 인증서 등	해당 기업에 한함
8.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 등) 증빙서류 ◦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(www.kipris. or.kr) → SEARCH →특허·실용신안 →검색 -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	특허청 (www.kipo.or.kr)
9.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ex) '21.3월말, '20.12월말, '19.12월말 ◦ 기업회원 로그인/기업서비스/조회/취득자 전체, 특정일 지정, 조회, 전체 인쇄	한국고용정보원 (www.ei.go.kr)
10. NET ◦ NET신기술인증(www.netmark.or.kr) → 검색 → 상세검색 → 회사명 → 검색	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11. Inno-Biz기업 ◦지방청 이노비즈기업 담당자 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(www.innobiz.net) 기타신청 →확인서사본발급	◦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◦이노비즈협회
12. 기업부설연구소 ◦ koita 연구소/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(www.rnd.or.kr) → 바로가기 서비스 → 인증서 출력	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
13. 기타 가점 증빙서류	해당 기업에 한함